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 정 2010. 12. 09. 예규 제14호
일부개정 2011. 12. 23. 예규 제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용역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연구개발사업”이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소요경비 일체 또는 그 일부를 부담하여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용역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고 연구내용 및 성과활용을 관리하는 연구소의 부서를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6. “세부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

제로 나누어질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협동 또는 분담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세부연구책임자”란 세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8. “자유공모”란 연구소장이 연구개발과제와 그 주관연구기관 모두를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지정공모”란 연구소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주관연구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기획공모”란 연구소장이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실시기관”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4.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5.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을 표절

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16.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소장이 용역연구개발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17. “제안과제평가”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정평가”란 용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진도평가”란 연구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도 등 최종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22.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활용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용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3조(용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연구소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용역연구개발과제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3. 진도평가에 관한 사항
4.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5.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

6. 제안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③ 평가단을 구성 및 운용할 시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수당) 연구소장은 평가회의 및 과제 검토를 위한 기획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용역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 등

제5조(관리조직) ① 연구기획과장은 용역연구개발사업을 조정·총괄하고,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 발표 승인
5. 그 밖의 용역연구개발과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의 반영
2. 제18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
3. 제21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 검사
4. 제25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활용

제6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 시설·인력·장비,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및 연구 환경 조성
3. 용역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세부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5. 세부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용역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 보고
6. 기타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작성
2. 용역연구개발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용역연구 참여연구원의 선정·교체 및 조정·감독
4.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및 활용성과의 보고
5.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6. 기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

제7조(용역연구개발과제 공고 및 재공고) ① 연구소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조달청),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내용, 용역연구개발과제별 주요내용
2. 용역연구개발과제 참가자격, 선정절차 및 일정
3. 용역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작성방법
4.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5.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6. 기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소장은 공고된 용역연구개발과제 접수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신청자가 없는 때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장은 제3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인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연구개발과제 신청) ①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연구개발과제를 2인 이상의 세부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수행할 때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제9조(용역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용역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의 상한을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2011.2.23)을 준용한다.

제10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 ① 연구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 받은 용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단의 선정평가를 거쳐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등을 선정한다.

② 연구소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에는 평가 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보완 및 제출) 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제10조 3항의 선정평가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체결) ① 연구소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에 대하여 요청 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용역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 계약의 변경 및 해약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9. 기타 연구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연구소장은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용역연구 계약보증금)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연구개발비 지급) ① 연구소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비 관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연구소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금을 요구한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④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2.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 사용한 금액
3.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제15조(용역연구개발비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포함), 금융기관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비를 써야 할 경우는 개인 신용카드, 기관 법인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비목 및 세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소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용역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소장의 승인사항과 자체 변경사항으로 구분하고 연구소장의 승인사항인 경우에는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요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변경 승인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등 주요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요청이 있는 때, 다만,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

유에 한한다.

2. 기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연구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

② 연구소장이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계약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등)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계약내용 위반으로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주관연구기관이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지연하여 연구 성과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연구소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개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6. 최종평가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때

7.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8. 기타 연구소의 예산사정 또는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한다.

④ 연구소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한다.

⑤ 연구소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제18조(진도관리) ① 연구소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과제 진도관리를 위해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진도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구기간의 3분의 2가 되는 시점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진도평가를 요청하거나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진도평가 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또는 진도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때
2.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⑥ 연구소장은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때까지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연구개발결과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와 기타 성과물을 계약종료 이전에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최종평가) ① 연구소장은 제19조에 따른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용역연구개발결과 검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의견이 반영된 최종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기간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검사기간 이내에 최종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검사하고, 제29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2조(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장은 용역완료 후,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지명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비용은 연구비 중에서 위탁정산수수료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②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인정하는 연구비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자체 정산으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수행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비 집행 증빙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 및 세목 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성과 활용 및 사후관리

제23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관리) 연구소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결과 발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세부과제 포함)는 연구결과를 포함한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발표)할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 성과를 논문이나 학술대회에 발표하고자 할 시에는 그 연구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③ 타 부처사업 및 과제와 중복으로 사사된 경우, 해당 논문 등 성과물은 동일 기여율($1/\text{중복과제 수} \times 100$)로 배분하여 산정 한 후 최종 성과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소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도출된 성과를 상시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

료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0월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장은 제출받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적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담당부서의 장에게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용역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① 용역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연구소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조치) 연구소장은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1호. 2009.9.23)을 준용한다.

제28조(용역연구개발비 회수)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2. 용역연구개발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5. 기타 이 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 회수금액 확정통보를 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현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장은 용역연구개발비 회수조치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의 공개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① 연구소장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계약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최종평가 및 제25조 제4항에 따른 추적평가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계약을 위반한 경우: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 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이의신청) 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용역연구개발과제 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점수 산정방식,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2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타당성 여부 및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1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 관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2조(연구노트)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28호. 2009.6.22)을 준용한다.

제33조(다른 법령 준용)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 이후에 공고되는 용역연구개발과제부터 시행한다.